심리상담 · 인권센터 규정

제정 2023. 5. 8. 제1차 개정 2024. 5. 2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상지대학교 심리상담 · 인권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구성원의 심리적·정서적·교육적 문제의 예방·해결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옹호 활동을 위한 심리상담·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와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<mark>각 호와</mark> 같다. (개정 2024.5.28.)

- 1. "인권"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- 2. "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"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신념, 성적(性的) 지향, 병력(病歷)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·배제·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(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3. "성희롱"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- 가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·정신적·물리적인 행위,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 - 나. 위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 - 다.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- 라.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- 4. "성폭력"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.
- 5. "대학 내 괴롭힘"이란 대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

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,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
6. 삭제 (2024.5.28.)

- 7. "인권침해 등"이란 성희롱·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 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8. "피해자"란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.
- 9. "가해자" 란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.
- 10. "신고인"이란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- 11. "피신고인" 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.
- 12. "사건 당사자"라 함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.
- 13. "사건 관련인"이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.
- 14. "관계부서" 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심리상담 ·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15. "구성원"이란 본교의 정관, 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, 교직원, 학생 등을 말한다.
- 16. "센터장"이란 심리상담 · 인권센터장을 말한다.
- **제4조(센터장의 직무)**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.
 - ②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조직)** ① 센터 내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팀과 인권침해 등(성희 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 상담, 조사, 피해자 구제, 예방, 기타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권팀을 각각 둔다.
 - ② 센터의 기능 및 직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리상담 · 인권센터 운영위원회,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권 및 양성평등위원회,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을 조사하기위한 조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③ 센터 내에 상담 및 인권업무를 위한 약간 명의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.
 - ④ 센터 내에 교육 및 연구업무를 위한 전임연구원과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 · 담당하기 위한 팀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.

- ⑤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에 대한 상담, 조사, 연구,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⑥ 삭제 (2024.5.28.)

제2장 상담팀의 업무

제6조(상담팀 업무) 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- 2. 심리검사의 실시
- 3. 학습상담프로그램의 운영
- 4. 본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
- 5. 센터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실시
- 6. 학생상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
- 7. 심리적 고위험군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 ·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· 운영
- 8.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상담에 필요한 사항의 실시
- 제7조(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) ① 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 계획에 참 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- ② 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, 센터 이용 학생이나 주변 인물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
 - ③ 센터 관련된 기록(면접기록, 검사기록, tape, video tape, 편지 등)은 센터의 전문기록으로 서 5년 동안 센터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④ 센터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한다. 다만 센터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.
- 제8조(프로그램 평가주기 및 활용) ① 센터는 상담 내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·분석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② 센터는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.

[제목개정 2024.5.28.]

제3장 인권팀의 업무

제9조(인권팀 업무) 인권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4.5.28.)

- 1. 본교 구성원 간 또는 당사자 일방만의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 관련 <mark>민원</mark> 상담과 조사
- 2.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3.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,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, 교육 및 홍보
- 4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
- 5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상담
- 6.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담
- 7.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인권및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
- 8. 그 밖에 성희롱 ·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
- **제10조(인권팀 업무의 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다.
 - ②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교내 · 외를 불문한다.

제4장 위원회

제1절 심리상담 · 인권센터 운영위원회

- 제11조(심리상담·인권센터 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심리상담·인권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교무연구처장, 학생취업지원처장, 행정지원처장,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 - 4. 센터의 환류시스템 운영(신입생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와 프로그램 개선 등)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2절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

- 제12조(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) ① 센터는 본교 구성원의 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대표 및 외부전문가로 하며,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 또한, 운영위원 중 반드시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다.
 - ③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⑤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⑦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심의하는 인권 및 양성평 등 위원회에는 학생대표의 참석을 제외한다.
 - ⑧ 인권 및 양성평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1. 인권 및 양성평등업무에 관한 사항
 - 2.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삭제 (2024.5.28.)
 - 4.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
 - 5. 양성평등 교육, 성희롱 · 성폭력의 예방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
 - 6. 기타 성희롱 ·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 - 7. 본교의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8. 제7호 이외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
 - 9.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
 - 10. 그 밖에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 등

제3절 조사위원회 [제목개정 2024.5.28.]

제13조(설치) ① 센터장은 본교 구성원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 신고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조사가 종결되

면 해산한다. (개정 2024.5.28.)

-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전문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- ③ 위원장은 <mark>위촉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</mark>,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. (개정 2024.5.28.)
- ④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.
- ⑤ 삭제 (2024.5.28.)
- ⑥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 (개정 2024.5.28.)

제14조(기능)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 (개정 2024.5.28.)

- 1.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 조사
- 2.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의 작성 및 제출
- 3.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
- ② 삭제 (2024.5.28.)
- ③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 의 권익침해)의 사건을 조정·중재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- 제1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사대상, 시기,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16조(조사위원의 제척과 기피)** ①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에서 제척된다. (개정 2024.5.28.)
 - 1. 조사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2. 조사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3. 조사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
 - ② 당사자는 조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③ 조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- **제17조(조사 결과 제출)** ① 위원장은 사건 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② 센터장은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인권및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신설 2024.5.28.)
 - ③ 센터장은 인권및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

한다. (신설 2024.5.28.) [제목개정 2024.5.28.]

제5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

제18조(신고)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센터에 한다.

- ② 피해신고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센터 이외의 본교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.
- ④ 센터는 신고 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센터에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- ⑥ 전항의 경우 센터장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센터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된 이후, 상담과정과 사건 처리과정 중 필요시 가해자의 자퇴·휴학·퇴학·사직·휴가 등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센터장은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,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근로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당 학과나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19조(신고의 각하 또는 기각)**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다.
 - 1.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
 - 3.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- 4.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
 -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 - ③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- ④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
- 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.
- ⑤ 피해신고를 한 제3자는 피해자 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.
- 제21조(피해자 중심의 원칙) 사건을 조사, 심의,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.
- 제22조(사건의 조사와 처리) ① 센터는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②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,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③ 센터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피해자, 가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④ 신고 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- 제23조(조사의 방법 및 보고) ①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5.28.)
 - 1. 신고인·피해자·피신고인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
 - 2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의 제출 요구
 - 3. 당사자,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 는 정보의 조회
 - 4.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
 -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상담결과에 대해 인권및양성평등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24.5.28.)
- **제24조(교육)**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본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,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 - 2. 성희롱 ·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- 3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 - 4. 성희롱 ·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
 - 5. 그 밖에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

- ② 구성원에 대한 교육업무는 교원은 교무연구팀, 직원은 행정지원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25조(예방조치) 성희롱·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1. 상담창구 마련
 - 2.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
 - 3.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
 - 4. 성희롱 ·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
 - 5. 성희롱 ·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
- **제26조(화해의 권고)** ①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.
- 제27조(구제조치 등)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해)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·정책·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제28조(제2차 피해의 방지) ① 인권침해 등(성희롱, 성폭력, 대학 내 괴롭힘, 그 밖의 권익침 해) 사건의 조사는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 - ② "제2차 피해" 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.
 - 1.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
 - 2.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·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
 - ③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이유로 조사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자를 새로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불이익의 금지)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학업평가, 업무참여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30조(수당 등 경비)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31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

준용한다.

제32조(운영세칙)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3조(관계부서의 협력의무) 본교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068, 2023.05.0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및 학생심리상담센터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288, 2024.05.28.)

이 규정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